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61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이재강 · 조계원 · 권향엽
최혁진 · 박지혜 · 박민규
김영배 · 이광희 · 김우영
임미애 · 신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 및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함.

이에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북한 내 주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부는 북한 내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관련 정보 제공,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의2제1항제5호).
-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난관리 지원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① 정부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관련 정보 제공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3. 보건의료활동
4. 임시 재난 복구
5. 그 밖에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에 대한 남한과 북한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을 “인도적문제

해결, 인권개선,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통일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3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재난관리 지원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① 정부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재난 관련 정보 제공</u> <u>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u> <u>3. 보건의료활동</u> <u>4. 임시 재난 복구</u> <u>5. 그 밖에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정부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에 대한 남한과 북한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u> <u>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재난 공동대</u>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 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② (생략)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인도적문제 해결, 인권개선,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

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

축-----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